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간호사 연대의 제안

--

국제 간호사 연대(Global Nurses United)는 전 세계 30 여개 국가의 간호사 및 보건 종사자 노조로 구성된 연맹으로서 간호사 등 보건 종사자들의 노동 권리, 견고한 공중보건 인프라,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과 치료를 위해 함께 분투합니다.

--

간호사와 각국의 간호사 노조는 세계 곳곳의 기후 변화로 일어나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일선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 시스템과 인프라는 기후 변화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저희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간호사들은 각 나라와 지역사회에서 폭염, 가뭄, 산불부터 해수면 상승, 홍수를 비롯한 많은 자연재해 등 벌써 기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을 압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질병 전염, 대기 오염, 농작물 피해, 그리고 사람들이 생존하기에 부적당해지는 지역을 떠나는 세계적 인구이동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온도 상승과 기상이변이 이미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열사병, 신체 부상, 영양실조, 전염병 노출, 그리고 인구 이동과 분쟁 노출로 인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 년 국제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보고서에서는, 현재 세계 배기량 추세가 계속된다면 기후 변화의 건강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중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이 되면 매년 9 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관련 요인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2015 년 파리협약은 “건강할 권리”를 기후 조치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언급했으며, 전 세계 보건 종사자들은 이 지구의 건강과 우리 인간의 건강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늘 인식해 왔습니다. 공중 보건을 수호하기 위해 각 정부는 인프라, 공중보건 대비책 마련, 인간 생존 및 기후 정의를 위한 투쟁에 필수적인 건강 및 안전 보호 조치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국제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는 사상 최초로 공식 “건강의 날”과 건강 각료 회의가 포함됩니다. 국제 간호사 연대는 기후 협약의 일부로 보건이 공식 포함된 것을 환영하며, 모든 국가들이 이 회의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보건 및 기후 대비를 포괄한 조치에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간호사들은 우리 지역의 공중 보건을 수호하고자 헌신합니다.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의료 시스템의 준비 태세를 향상하기 위하여 각 정부가 다음 제안사항을 지키기로 약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1. **기후 위기 완화**를 위하여 화석 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모두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글로벌 탄소 배출을 급격히 감소해야 합니다.

화석연료 사용 급감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새로운 화석연료 인프라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탄소 무배출 미래를 달성하려면 화석연료의 소비와 생산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의료 시스템은 병원 인프라, 그리고 의료 제품 및 서비스 공급망에서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거의 5 퍼센트를 유발합니다.¹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글로벌 배출량의 상승을 막으려면, 각 나라가 중요 보건 인프라에서 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의료기관들이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료 및 응급 인프라를 개선**하여 기후 재앙 시에도 모든 병원과 의료 시설이 계속
작동할 수 있고 향후 기상이변에 대비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전 세계 간호사들은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간호사 업무 수행에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기상이변의 빈도와 심각성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의료 서비스는 덩기열이나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전염성 질병의 예상치 못한 발생으로 압도될 우려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계속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정부가 의료 인프라를 위한 복원성, 지속 가능성, 재난 경감 노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위기관리 프레임워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정부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비상 사태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 공급망의 복원성, 투명성, 지속가능성 보장에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원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국내 생산 및 지역 공급망의 지원과 개발에 노력하도록 권고합니다.

3. 기온 상승과 전염병 증가에 맞서 **공중 보건을 수호**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에서 대중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우리는 국제 사회가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을 막지 못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의료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되었습니다. 각 나라와 지역별로 모든 사람을 위한 진료 및 고품질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 계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식수와 향상된 위생 시설에 접근할 권리를 제공하고, 보건 교육과 정보 예방접종을 포함한 필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저소득 국가들이 필수 보건 인프라에 투자할 준비를 갖추도록 하려면, 정부 기관 및 다국적 금융 기관들은 남반구의 저소득 국가를 위하여 채무면제를 제공하고 부채 해결 프레임워크를 조정해야 합니다.² 글로벌

¹ Matthew J. Eckelman, Kaixin Huang, Robert Lagasse, Emily Senay, Robert Dubrow, and Jodi D. Sherman. “미국의 의료 서비스 오염과 공중보건 손상: 업데이트.” 2020년 12월 7일.

<https://www.healthaffairs.org/doi/full/10.1377/hlthaff.2020.01247>. 확인일자 11/13/2023.

² Ivana Vasic-Lalovic, Lara Merling, Aileen Wu, 경제정책연구소(CEPR). *남반구 국가들의 늘어나는 빚 부담: 기후 및 개발 목표의 해방꾼*. 2023년 10월 12일.

<https://cepr.net/report/the-growing-debt-burdens-of-global-south-countries-standing-in-the-way-of-climate-and-development-goals/>. 확인일자 2023년 11월 10일.

공중 보건과 기후 적응 조치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며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4. 재해 시 일선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종사자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기상이변 사태에 대처하고 급격한 온난화로 피해를 입은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확실한 준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기온 상승은 의료 종사자들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크게 위협하며, 정부는 의료 종사자들이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생기는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기후 재난에 관련된 임상 훈련을 실시하는 데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각 보건 시설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PPE)뿐 아니라 기후 이변 시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를 위하여 적정 간호사 배치(Safe Staffing), 근로자 보호 조치, 보호 불가능 시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이 단체 협상을 진행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5. 기후 및 의료 대비 프로그램 개발에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공중보건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조치들이 모두에게 공평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려면 각 정부가 폭넓고 다양한 범주의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기후변화는 인종 불평등과 성별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이는 기후 변화로 가장 심각한 건강 문제가 이미 의료 불평등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토착 주민들, 여성과 성소수자들, 유색인종, 저소득 주민들은 의료 문제와 기후 문제가 얽힌 위기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인종 정의와 성평등을 위협하는 기후 변화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면 정부는 인종별, 성별 기후 영향과 의료 문제에 대비한 각종 프로그램 마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들 및 각 노동조합과 반드시 상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도 의료적 대비 계획에 발언권을 확보해야 하는 원주민 및 토착 주민 지도자와 반드시 의미 있는 상의를 거쳐야 합니다.